

디자인비즈광주 상담 서비스 운영 및 상담료 지급 기준

디자인비즈광주 상담 서비스 운영 및 상담료 지급 기준

제1조 (목적)

이 기준은 디자인비즈광주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디자인 상담 서비스의 운영 절차와 상담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,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고 행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대상)

- ① 본 기준은 디자인비즈광주 플랫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는 일반기업(자영업자·소상공인·중소기업·기관 등)과 상담을 수행하는 디자인전문기업에 모두 적용한다.
- ② 디자인 상담서비스 이용 대상은 사업장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한다.
- ③ 모든 상담은 플랫폼을 통해 신청·기록·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 (상담 수행 주체의 정의)

- ① “상담 수행기업”이란 디자인비즈광주 플랫폼에 등록·승인된 디자인전문기업을 말한다.
- ② “상담 신청기업”이란 플랫폼을 통해 디자인 상담을 신청한 일반기업(자영업자·소상공인·중소기업·기관 등)을 말한다.
- ③ 상담은 기업 단위로 인정되며, 상담 수행기업이 지정한 상담 담당자를 통해 수행한다.
- ④ 상담 담당자는 디자인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수행 역량을 보유한 자로 기업이 지정하며, 상담 결과물 작성 및 플랫폼 입력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.
※ 상담 담당자의 요건 충족 여부 및 경력 관리는 디자인전문기업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.
- ⑤ 상담 수행에 따른 결과 및 책임은 상담을 수행한 디자인전문기업에 귀속되며, 상담 담당자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는다.
- ⑥ 상담 수행 기업 및 상담 담당자는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이용자의 경영 상태, 기술 정보 등 제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상담 수행 기업에 귀속된다.

제4조 (상담 운영 원칙)

- ① 상담방식은 비대면(온라인 채팅·유선·이메일) 또는 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.
※ 단, 2026년도는 시범운영 기간으로, 상담은 ‘대면(상담)방식’으로만 운영한다
- ② 기업당 상담 횟수 및 운영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예산 소진 시 상담 운영은 제한될 수 있다.
- ③ 동일 상담건의 반복 신청은 불가하며, 상담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진흥원에 별도 문의한다.

제5조 (상담 수행 기준)

- ① 상담내용은 문제 진단, 개선 방향, 실행 가능 제안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② 단순 견적 문의, 동일·반복 상담, 형식적 작성 또는 내용이 미흡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제6조 (상담 결과물 및 증빙 기준)

- ① 상담 종료 후 상담 수행기업은 상담 결과물을 플랫폼에 등록·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상담 결과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상담 개요(상담 일시, 방식, 주요 내용)
 - 상담내용(문제 진단, 개선 방향, 실행 가능 제안 사항 등을 포함)
 - 향후 조치 방향 또는 참고 사항
 - 상담 방식별 증빙자료
 - 온라인 상담 : 대화 내역
 - 방문 상담 : 상담 사진 1매 이상
 - 전화 상담 : 통화 내역
 - 이메일 상담 : 상담 답변 내용
- ③ 상담 신청기업은 상담 완료 후 플랫폼에서 '상담 완료 및 만족도 평가'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, 이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상담 수행기업의 상담료가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다.

제7조 (상담료 지급 기준)

- ① 상담 방식별 상담료 지급 기준

구분	상담 방식	상담료 지급 기준(안)	비고
1	비대면 상담 (온라인 채팅, 유선, 이메일)	미정	상담 결과물 제출 (상담 내용 및 관련 증빙 사진 등)
2	대면 상담	최대 150,000원 / 건	

- ② 상담료 지급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디자인비즈광주 플랫폼에 등록·승인된 디자인 전문기업에 한한다.
- ② 상담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한다.
 - 상담 결과물 등록 및 증빙자료 제출 완료
 - 관리자((재)광주디자인진흥원) 검수 승인
 - 신청기업 상담 완료 및 만족도 평가
- ③ 지급 기준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 - ※ 2026년에는 디자인 기업당 연 2회 이내,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
- ④ 상담료 지급은 관련 법령 및 내부 보조금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한다.

제8조 (상담료 지급 절차)

- ① 상담 신청기업이 상담 완료 및 만족도 평가를 완료한다.
- ② 상담 수행기업은 상담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담 결과물 및 증빙자료를 등록·제출하여야 하며,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상담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.
- ③ 상담 결과물은 (재)광주디자인진흥원(관리자)이 형식 및 내용 적정 여부를 검수한 후 지급 승인한다.
- ④ 상담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,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정산 지급한다.
 - ※ 결과물 미등록 또는 증빙 미비 시 지급 불가, 또한 제출 후 수정 제한

제9조 (책임의 한계)

- ① 본 서비스는 디자인 전문 지식 제공을 위한 '자문' 서비스로, 상담 내용은 상담 담당자의 개인적/전문적 견해이며 진흥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다.
- ②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 최종 의사결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적·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(신청자)에게 있다.

제10조 (상담료 환수 및 참여 제한)

-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, 진흥원은 지급된 상담료를 환수하거나 해당 기업의 플랫폼 이용 및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.
 - 허위 상담 결과물을 등록하거나 증빙을 조작한 경우
 - 동일 건에 대하여 타 기관의 보조금을 중복 수령한 경우
 -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담료를 청구한 경우

제9조 (기타)

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(재)광주디자인진흥원 운영 지침에 따른다.